

우체국 다드림(多Dream) 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우체국 다드림 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1인 1계좌)

제4조 【가입 및 해지】

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저축방법】

-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
-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
-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제7조 【적용이율】

-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1.0%p를 제공한다.
 1. 가입 시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 : 연 0.1%p
 2. 가입 또는 만기해지 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 연 0.1%p
 3. 다드림 적금 3년 만기 가입 시 : 연 0.2%p

4. 급여이체, 연금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다드림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중 매월 2가지 이상 실적 해당 시 : 연 0.4%p
5. 다드림 통장 (월평균 100만원 이상) 또는 다드림 체크카드 (월 10만원 이상) 이용실적 해당 시 : 연 0.2%p

구 분	제공조건	이율 (연, %p)
고객 우대	가입 시 우체국예금 3년 이상 장기거래 고객	0.1
	가입 또는 만기해지 시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0.1
장기 우대	다드림 적금 3년 만기 가입 시	0.2
주거래 우대	급여이체, 연금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다드림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중 매월 2가지 이상 실적 해당 시	0.4
파트너 우대	다드림 통장(월평균 100만원 이상) 또는 다드림 체크카드 (월 10만원 이상) 이용실적 해당 시	0.2

-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절차를 갈음한다.

제8조 【이율적용방식】

-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 ② 고객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1. 장기거래 고객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예금을 최초로 계좌 개설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 ※ 단, 예금 가입 취소는 장기거래 고객 산정 기준에서 제외
 2.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은 신규 가입일 또는 만기해지 시점에 우체국예금 우수고객인 경우
- ③ 장기 우대이율은 다드림 적금을 3년으로 가입을 하고 만기해지 할 경우 적용한다.
- ④ 주거래 우대이율은 실적 인정기간^{주1)} 동안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 요건 중 매월 2가지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는 개월수가 (1년제 : 6개월, 2년제 : 12개월, 3년제 : 18개월)^{주2)}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 ※ 주1) 실적 인정기간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까지 (예시) '15.12.10일 1년 만기 다드림 적금 가입 시 실적인정기간 : '15.12월부터 ~ '16.10월까지
 - ※ 주2) 실적 충족 개월 수 산정은 연속된 개월 수 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
 1. 급여이체는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 (±3영업일)에 있는 경우’ 또는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 이 있는 경우

2. 연금수령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입금되거나 입금 내역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글자가 있는 경우
3. 공과금 자동이체는 아파트 관리비, 지로, CMS, 펌뱅크를 통한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납부자 자동이체, 예약이체 제외)
4. 적금 자동이체는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다드림 적금으로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⑤ 파트너 우대이율은 실적 인정기간^{주1} 동안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요건 중 1가지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는 개월수가 3개월 이상^{주2} 인 경우 적용한다.
 1. 다드림 통장의 월 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다드림 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 ※ 주1) 실적 인정기간은 신규일이 속한 월부터 만기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까지
 - ※ 주2) 다드림 통장 및 다드림 체크카드의 실적은 연속된 개월 수 뿐만 아니라 비연속적인 경우도 포함 (단, 다드림 체크카드 승인 취소는 실적 산정에서 제외)

제9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제10조 【이자지급방식】

-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 이자지급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
 2.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직전 영업일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단, 자동만기해지 시 이자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일과 지급일 사이의 일수는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제12조 【만기 후 해지】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

제13조 【특별중도해지】

-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하되, 가입 후 6개월 미 경과한 예금은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 및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 입원, 출산,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택구입 :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2.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3. 입원 : 입원 확인서 (2주 이상)
 4. 유학 : 입학 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5.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6. 이민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7. 퇴직,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 ※ 예금주 배우자의 사유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추가 제출

제14조 【분할해지】

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

제15조 【과세구분】

이 예금은 일반과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제16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은 양도, 담보제공이 불가하다.
- ③ 이 예금은 「다드림 패키지 우대서비스」에 따라 다드림 통장에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